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1-23

수 원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9구합7300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20. 10. 8.
판 결 선 고	2020. 11.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① [redacted]시 [redacted]구 B 외 6필지의 토지 5,396㎡ 및 건물 738.25㎡에 대한 취득세 158,505,500원의 부과처분, ② [redacted]시 [redacted]구 C 외 1필지 토지 255㎡에 대한 취득세 7,120,6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1-23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4. 5. [redacted]시 [redacted]구 D(아래 나.항 기재 '[redacted]시 [redacted]구 B'의 도로명주소에 해당한다)에서 '식품의 제조, 포장 및 판매업, 음료의 제조, 포장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E은 당초 공업용 부속토지 등으로 이용되던 ① [redacted]시 [redacted]구 B 대 661㎡ 등 6필지 토지 및 지상 건물, ② C 답 151㎡ 외 1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 또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①, ②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4.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5. 4.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소유하던 중, 2016. 3. 17.자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2016. 4. 18.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6. 4. 18. 피고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특법'이라 한다) 제57조의2 제4항에 근거하여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2016. 5. 16. 피고로부터 취득세 등 감면결정(이하 '이 사건 감면결정'이라 한다)을 고지받았다.

라. 그 후 피고는 2019년 소극행정 실태 특별조사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이 종전 사업장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종전 사업장의 사업과 원고 사업의 동질성도 유지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9. 5. 2. 이 사건 감면결정을 취소 통지하고, 2019. 5. 3. 취득세 등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9. 5. 30. [redacted]도지사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는데, 2019.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1-23

7. 10. [redacted]도지사로부터 '과세관청의 이 사건 감면결정 통지는 그 결정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착오가 있었더라도 단순한 사실행위라거나 일반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고, 원고로서는 이러한 과세관청의 감면결정을 신뢰하고 납세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상 원고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과세예고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합산한 부분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일부채택 결정을 받았다.

바. 이러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따라, 피고는 2019. 7. 16.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취득세 144,022,790원, 지방교육세 14,402,270원 합계 158,425,060원을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1, 12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E이 기존에 운영하던 'F'의 사업장이 아니고, 기존 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쓰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이 사건 부동산은 출자자인 E이 당시 G에 있던 'F'를 이전, 확장하기 위해 매입한 부동산으로서 실제로 매입과 동시에 커피 및 부자재 관련 창고로 사용하였고, 2016. 6. 커피 테마파크로의 확장을 위한 토목, 건축 비용 역시 F 명의로 결제하였으며, 2015년 국세청에 신고한 F의 재무상태 증명에도 이 사건 부동산이 고정자산에 포함되어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1-23

2) 현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고, 커피 원부자재의 물류창고 및 커피머신 등의 조립과 커피 로스팅과 제조를 위한 설비를 준비 중이므로 그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다.

3) 원고는 2016. 4. 18. ㈜H과 사이에 2016. 12. 25.까지 건물을 준공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7. 3. 29. 시공사 측의 내부 사정으로 공사타절의사를 밝힘에 따라 다른 공사업체 등과 추가계약을 하고 잔여공사를 진행하던 중 신축공사를 통한 분쟁으로 2018. 1. 21. ㈜I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2018. 6. 4. 준공할 수 있었는바, 이러한 공사 지연 및 관련 분쟁에 따라 원고는 2017. 10. 31, 현물출자의 목적사업을 시작하였음에도 2019. 7. 9.경에 이르러서야 J 까페 영업신고증을 교부받는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시작했던 것이므로 현물출자의 목적인 까페 사업의 운영이 지연된 사정이 있다.

4) 구 지특법 제57조의2 제4항 후단의 추징규정이 적용되는 '해당재산의 처분'은 건물의 철거 등으로 해당 재산에 대한 지배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취득"의 반대 개념인바, 이 사건의 경우 2016. 3. 17. 현물출자 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2016. 4. 5. 법인으로 전환되었으며 2016. 4. 20. H에게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여 신축공사가 시작되었으며 2018. 6. 4.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추징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쟁점에 대한 판단

E이 원고를 설립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출자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1-23

므로, 이하에서는 ① 현물출자 이전 E의 종전 사업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용 고정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지, ②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더라도 원고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처분한 경우로서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다.

1) 종전 사업장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가 현물출자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등을 면제하는 취지는 이러한 경우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형태만을 바꾸는 것에 불과하여 재산 이전에 따르는 취득세, 등록세 등을 부과할 필요가 적음과 더불어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을 장려함에 있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두12182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앞서 인용한 증거들과 갑 제16 내지 19, 24호증, 을 제2 내지 4, 6,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E이 종전의 사업장 운영을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E이 2013. 10. 15. 'F 상도1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장 소재지는 '[redacted]구 G'(이하 '종전 사업장'이라 한다)이고, 업태는 '커피숍, 호프'인 반면, 원고의 업태는 '제조업, 도소매, 부동산업, 서비스업'이고, 종목은 '커피기계, 식품, 기계, 포장재, 임대업, 테마파크의 시행'으로서 E의 종전 사업과 원고 사업의 업태 및 종목이 상이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됨을 전제로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종전 사업장의 대표자이자 현물출자자인 E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커피숍이나 호프를 운영한 적이 없고,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이 사건 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1-23

동산과 종전 사업장의 거리, 입지조건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이 종전 사업장의 직접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② 원고는 2016. 3. 17.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아 2016. 4. 5. 설립된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6. 4. 29.자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2016. 6. 10. 이 사건 건물 4개동에 관하여 철거신고를 한 후, 2016. 6. 17. 이 사건 토지 지상 'A' 공장 건물 신축사업에 착공하였으며, 2018. 6. 4. 위 신축공사를 완료한 뒤 4개동 공장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 사건 토지는 2018. 7. 11. 그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되었고, 그 지상 건축물에 대한 증축 허가 및 2018. 9. 6. 일부 말소를 거쳐 현재의 건축물, 즉 철근콘크리트 구조 지상 3층 공장 등 4개동의 공장으로 구성된 산업단지가 되었다.

③ 한편, E이 2016. 3. 17. 현물출자 이전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종전 사업의 고정자산으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현물출자 양도계약서에 의하더라도 E의 이 사건 부동산 매입 및 현물출자 당시 그 용도는 공업용 부속토지, 공장용지 내지 단층 공장, 창고, 화장실 등이었고, 피고의 출장보고서 등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서 커피숍 등을 영위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 등에서 말하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사업을 영위하는데 중추적인 기능을 하는 재산으로서 당해 사업의 본래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재산을 말하는 것인바,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E이 주관적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을 종전 사업장의 확장 이전을 위하여 취득한 것이라거나 실제로 재료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객관적으로 종전 사업을 영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1-23

하는데 중추적인 기능을 하거나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용 재산'이었다고는 보기는 어렵다.

⑤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등 4필지의 공장부지에 대한 개발행위 및 그 지상 공장건물 4개동의 신축을 마친 후, 2019. 3. 26. ㈜K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동 건물(3개층) 전체 면적 929.13㎡ 및 공장용지 3,946㎡를 임대기간 2019. 5. 1.부터 2021. 4. 30.까지 2년간 보증금 1억 2,000만 원, 차임 월 990만 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위 ㈜K는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산업용로봇,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 제조, 도소매, 서비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2. 7. 3. 사업자 등록을 마친 제조업체로서, E의 '까페업, 호프' 영업 및 G 소재 종전 사업장이나 그 밖의 커피 제조 또는 가공업과는 전혀 무관한 업종일 뿐 아니라, E의 종전 사업내용에 '부동산 임대업'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⑥ 원고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개발행위 및 그 지상 공장건물 신축사업을 시행하였는데, 그 후 원고가 2020. 4. 13.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커피가공업' 공장등록을 마쳤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가 산업집적법 규정에 따라 그 입주업체가 '제조업', '가공업' 등으로 한정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⑦ 이처럼 E의 종전 사업장은 산업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개발 및 공장건물 신축사업과는 전혀 무관해 보일뿐만 아니라, 피고가 2019. 5. 14. 및 2019. 6. 14. 2회에 걸쳐 작성한 출장보고서에 의하더라도 원고 및 E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커피숍, 호프'를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 후 원고가 2019. 7. 9.경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J카페'라는 명칭으로 식품접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1-23

객업 영업신고를 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의 추징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물출자의 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위와 같이 영업신고, 사업자등록 등을 뒤늦게 마친 것으로 보일 뿐, 원고의 주된 사업 목적은 이 사건 토지상에 산업단지를 설립하여 이를 임대하는 것에 있다고 보인다.

⑧ 이러한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비록 E이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원고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형태만 바꾸는 것에 불과하다거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법률 규정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E이 원고를 설립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출자함으로써 원고가 이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E으로부터 현물출자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은 구 지특법 제57조의2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감면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추징사유 해당 여부

나아가, 구 지특법 제57조의2 제4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3항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가 면제된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하더라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강제 수용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추징규정'이라 한다).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 체계, 문언 및 입법 취지에 더하여, 앞서 본 증거들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1-23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가 2016. 4. 5. 현물출자 받아 취득한 이 사건 건물 면적 738㎡ 중 598.25㎡를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인 2016. 4. 29. 및 2018. 3. 27. 각 철거하여 멸실된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따른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2년 내에 이 사건 건물 중 상당 부분을 철거하고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새로운 공장 건물로 증축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공장 건물을 제조업체 등에게 임대하여 이를 현물출자 당시의 현황 및 용도대로 원고 스스로의 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하지 않게 된 이상, 위 추징규정에서 말하는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볼 수 있더라도 원고의 행위는 구 지특법 제57조의2 제4항 후단에서 말하는 '해당 재산의 처분(임대)'에 해당하므로, 종전의 감면결정을 취소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1-23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2(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④「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5. 3. 대통령령 제27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2(법인 합병의 범위 등)

③ 법 제57조의2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사업용 재산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
2. 법령에 따른 폐업·이전명령 등에 따라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업용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1-23

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끝.